

# 발주기관별 건설기술인 평가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24. 9.

오치돈 · 홍유나



# 목 차

---

<b>I. 서론</b> .....	<b>1</b>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	3
<b>II.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별 평가체계 분석</b> .....	<b>6</b>
1. 사업자 선정방식별 평가체계 분석 .....	6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PQ) 평가체계 .....	7
(나) 적격심사낙찰제 평가체계 .....	12
(다)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체계 .....	15
2. 소결 및 시사점 .....	20
<b>III.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분석</b> .....	<b>21</b>
1. 국토부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분석 .....	22
2. 국토부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분석 .....	22
3. 발주기관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세부평가기준 비교·분석 .....	27
(가) 기술인 등급 평가기준 비교·분석 .....	28
(나) 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평가기준 비교·분석 .....	28
(다) 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평가기준 비교·분석 .....	33
(라) 기술인 교육훈련 평가기준 비교·분석 .....	35
4. 소결 및 시사점 .....	37

<b>IV. 발주기관별 입찰공고문 비교·분석 .....</b>	<b>39</b>
1. 공동주택(아파트) 입찰공고문 비교·분석 .....	39
2. 업무시설 입찰공고문 비교·분석 .....	44
3. 도로분야 입찰공고문 비교·분석 .....	48
4. 소결 및 시사점 .....	52
<b>V. 기술인 평가체계 개선방안 제안 .....</b>	<b>54</b>
1. 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 세부평가방법 규정 ...	54
2. 건설기술인 자기평가 시스템 개발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 ....	57
<b>VI. 결 론 .....</b>	<b>61</b>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은 사업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적격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기술인의 역량이 사업성과 창출의 핵심 요소인 만큼 평가항목 구성에 있어 기술인 평가 항목은 타 항목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함.

- 이에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은 기술인 평가에 만점을 받기 위해 입찰 전략을 수립하고 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들을 영입·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기술인 평가체계가 건설기술인 권익과 경력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정부는 건설산업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술인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오고 있음.

-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으로 업무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역량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경력·실적, 업무 중복도 등 평가기준 정비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b>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b> (2023 ~ 2027)</p> <p style="text-align: center;">2023. 12</p> <p style="text-align: center;">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p>	<p style="text-align: center;"><b>IV. 7차 기본계획 목표 및 주요과제</b></p> <table border="1"> <tr> <td><b>비전</b></td> <td>첨단기술 확산을 통해 다시 도약하는 건설산업</td> </tr> <tr> <td><b>목표</b></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성) '22: 94.2 → '30: 110 (↑15~100)</li> <li>★ (Eng. 해외수주) (top 225 기업) '22: 11개 → '27: 15개 (해외시장 점유율) '22: 0.9% → '27: 2%</li> <li>★ (안전) '27년 건설공사 사망자 200명 이하 감축 ('22: 402명)</li> </ul> </td> </tr> <tr> <td><b>주요방향</b></td> <td>주요과제</td> </tr> <tr> <td><b>1.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건설 확산</b></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IM 도입으로 건설산업 디지털화</li> <li>생산시스템 자동화·모듈화</li> <li>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li> </ul> </td> </tr> <tr> <td><b>2. 건설Eng. 산업 경쟁력 제고</b></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 중심으로 발주제도 개선운영</li> <li>Eng. 입찰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li> <li>고부가가치 분야(PM) 육성</li> </ul> </td> </tr> <tr> <td><b>3.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공사시설품질 안전 확보</b></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공사 참여 주체별 책무 강화 및 이행력 제고</li> <li>이행력 제고를 위한 품질 보증 및 인허가제도 확대</li> <li>안전 품질 관리체계 강화 및 전환을 전후 유도</li> <li>시설품질 안전성능 확보 및 유지보수 산업 육성</li> </ul> </td> </tr> <tr> <td><b>4. 건설기술인 역량 강화</b></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인의 양성</li> <li>기술인 등급정책체계 개선 및 인형력 수급 관리</li> </ul> </td> </tr> <tr> <td><b>5. 핵심기술 개발 등 건설산업 고도화</b></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래수요에 대응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li> <li>건설 신기술 활성화</li> <li>공시비/공시기간 산정기준 등 개선</li> </ul> </td> </tr> </table>	<b>비전</b>	첨단기술 확산을 통해 다시 도약하는 건설산업	<b>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성) '22: 94.2 → '30: 110 (↑15~100)</li> <li>★ (Eng. 해외수주) (top 225 기업) '22: 11개 → '27: 15개 (해외시장 점유율) '22: 0.9% → '27: 2%</li> <li>★ (안전) '27년 건설공사 사망자 200명 이하 감축 ('22: 402명)</li> </ul>	<b>주요방향</b>	주요과제	<b>1.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건설 확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IM 도입으로 건설산업 디지털화</li> <li>생산시스템 자동화·모듈화</li> <li>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li> </ul>	<b>2. 건설Eng. 산업 경쟁력 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 중심으로 발주제도 개선운영</li> <li>Eng. 입찰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li> <li>고부가가치 분야(PM) 육성</li> </ul>	<b>3.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공사시설품질 안전 확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공사 참여 주체별 책무 강화 및 이행력 제고</li> <li>이행력 제고를 위한 품질 보증 및 인허가제도 확대</li> <li>안전 품질 관리체계 강화 및 전환을 전후 유도</li> <li>시설품질 안전성능 확보 및 유지보수 산업 육성</li> </ul>	<b>4. 건설기술인 역량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인의 양성</li> <li>기술인 등급정책체계 개선 및 인형력 수급 관리</li> </ul>	<b>5. 핵심기술 개발 등 건설산업 고도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래수요에 대응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li> <li>건설 신기술 활성화</li> <li>공시비/공시기간 산정기준 등 개선</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III PQ 제도 개선으로 입찰부담 완화</b></p> <p>□ (평가체계 개선)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역량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경력·실적, 업무 중복도 등의 평가기준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방향 저점도 심사기준 충족을 위해 경력실적 많은 기술인 확보에 지원한 나머지 일부 기술인들의 근무역력은 반영되고, 현행 실적의 활용도 무제한 상향</li> <li>특히, 분야별 개별기술인의 실적 반영기준 완화(예: 10~7건)</li> </ul> <p>□ (서회 간소화) 실적·경력증명서 등 각종 입찰서류를 최대한 편파 파악으로 대체하고, 무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개선</p> <p>□ (소재사실 입찰부담 완화) "후 가계약할 → 후 PQ" 가능한 소규모 사업의 상환액을 상향(예: 5억 원)하여 입찰비용 절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계약수 상회할때만 PQ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 (가계약수 미회하는 비공인도 포함 개선)</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IV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b></p> <p>□ (배이퍼런퍼나 관리 강화) 국토부, 시·도지사 Eng. 업체의 동종가산 계약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법리근거" 마련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 Eng. 업체의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 규정</li> </ul> <p>○ 정가/수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에 보유 기술인 대비 수주물량 및 소속 기술인 실적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대상 선정</p> <p>□ (불발허도급 근절) 발주청의 허도급 승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한 허도급 생태계 조성하고, 하수공인의 실적 환지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20년까지 승인실적은 총 97건(88억9천원)에 불과 (건설Eng. 발표 실적)</li> </ul> <p>□ (불공정 행위 개선) 발주청의 잦은 과업 중지 및 중지기간 동안 업무지시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Eng. 업체의 신고를 유도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공정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 지방청별로 운영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 기능·조직 확대 추진</li> </ul>
<b>비전</b>	첨단기술 확산을 통해 다시 도약하는 건설산업																	
<b>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성) '22: 94.2 → '30: 110 (↑15~100)</li> <li>★ (Eng. 해외수주) (top 225 기업) '22: 11개 → '27: 15개 (해외시장 점유율) '22: 0.9% → '27: 2%</li> <li>★ (안전) '27년 건설공사 사망자 200명 이하 감축 ('22: 402명)</li> </ul>																	
<b>주요방향</b>	주요과제																	
<b>1.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건설 확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IM 도입으로 건설산업 디지털화</li> <li>생산시스템 자동화·모듈화</li> <li>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li> </ul>																	
<b>2. 건설Eng. 산업 경쟁력 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 중심으로 발주제도 개선운영</li> <li>Eng. 입찰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li> <li>고부가가치 분야(PM) 육성</li> </ul>																	
<b>3.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공사시설품질 안전 확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공사 참여 주체별 책무 강화 및 이행력 제고</li> <li>이행력 제고를 위한 품질 보증 및 인허가제도 확대</li> <li>안전 품질 관리체계 강화 및 전환을 전후 유도</li> <li>시설품질 안전성능 확보 및 유지보수 산업 육성</li> </ul>																	
<b>4. 건설기술인 역량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인의 양성</li> <li>기술인 등급정책체계 개선 및 인형력 수급 관리</li> </ul>																	
<b>5. 핵심기술 개발 등 건설산업 고도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래수요에 대응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li> <li>건설 신기술 활성화</li> <li>공시비/공시기간 산정기준 등 개선</li> </ul>																	

<그림 1-1>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 실제, 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 28일,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개정안을 공표하여 시행하고 있음.
- 개정안에는, 젊은 기술인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중 설계 등 용역에 대한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 최대 요구 건수를 기존 10년간 10건에서 7건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와 같은 기술인 평가체계에 대한 검토·보완에도 불구하고, 평가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유사 시설유형에 대한 발주기관별 기술인 평가체계 및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입찰참가 준비 및 기술인 경력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일부 발주기관은 다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업계에서 기술인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각 발주기관별 기술인 평가체계 및 세부평가기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평가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그림 1-2>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기준 관련 문제 제기 사례

- 현재까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시 발주기관별 운영하고 있는 기술인 평가체계 및 세부평가기준을 비교·분석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주요 발주기관별 사업자 선정 전체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분석하여 평가 및 계약업무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는 존재하나, 본 연구는 기술인 평가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발주기관별 차이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중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발주기관별 기술인 평가체계 및 기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평가체계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건설기술인 권익 보호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별 평가체계를 분석하고, 그 중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과 발주기관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평가체계 및 기준을 비교·분석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함.
  - 주요 사업자 선정방식인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기술인 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사업수행 능력 평가(PQ)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대다수 발주기관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인 관련 평가항목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중심으로 기술인 평가체계 분석을 실시함.
  - 또한, 연구기간 등 여건을 고려하여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중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건축, 토목 등 건설 주요 직무분야에 모두 적용되고 있는 건설사업 관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중심으로 기술인 평가체계 분석을 실시함.

<표 1-1>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운영 현황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분야	소관 법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설계 등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축설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기설계/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설계/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 본 연구의 연구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국가계약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유관 법령 분석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별 평가체계를 검토하고, 건설기술인 관련 평가항목 구성 현황에 대해 분석함.
- 둘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분석을 통해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특히, 기술인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에 대해 고찰함.
- 셋째, 건설사업 관련 주요 발주기관을 선정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별(책임·분야별·기술지원기술인) 세부평가기준 비교·분석을 실시함.
- 넷째,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 도로분야에 대한 발주기관별 입찰공고문 비교·분석을 통해 유사 사업에서의 기관 간 평가체계 및 기준 운영 차이점을 도출함.
- 다섯째, 사업수행능력 평가(PQ)에 있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건설기술인 권익 보호 및 입찰 참가 기업 부담 완화

기술인 평가체계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 제안



<그림 1-3> 연구 범위 및 방법

## II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별 평가체계 분석

## 1. 사업자 선정방식별 평가체계 분석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은 적격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을 위해 적정 자격을 갖춘 업체를 사전 심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임.
  -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국토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해 실시함.
  -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기술인평가서(SOQ) 또는 기술제안서(TP)를 제출하게 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적격심사낙찰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기준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임.
- (종합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입찰가격, 용역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임.
- 조달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발주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사업수행 능력 평가(PQ) 대상 사업은 748건으로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인 56%를 차지함.(금액 기준 전체의 약 66% 차지)

&lt;표 2-1&gt; 건설엔지니어링 PQ/비PQ 사업 현황

방식		건수(건)	금액(억원)
PQ	PQ	729	4,372
	PQ+SOQ	8	106
	PQ+TP	11	265
	소계	748	4,743
비PQ	적격심사	304	348
	설계공모	249	1,531
	종합심사	29	597
	소계	582	2,476
합계		1,330	7,219

출처 : 계약업무 효율화를 통한 기술용역 발전 방안 연구(2022, 한국조달연구원) 재구성

###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PQ) 평가체계

- 사업수행능력 평가(PQ)는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로, 국토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해 실시해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국제입찰 공고 사업 규모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2년 주기로 고시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물품 및 용역은 2.2억원임.
-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①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이하 설계 등), ② 건설사업관리, ③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 및 진단)으로 구분하여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lt;표 2-2&gt; [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범위

평가항목	설계 등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진단
가. 참여기술인	50	60	45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10	25
다. 신용도	10	15	10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5	10	10
마. 업무 중첩도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교체빈도)	10	5	10
합계	100	100	100

출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에서 별표4

- 다만,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아래 사업에 대해 기술인평가서(SOQ) 또는 기술제안서(TP)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음.

<표 2-3> 기술인평가서(SOQ) 또는 기술제안서(TP) 제출 대상 용역

대상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인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li> <li>• 나.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li> <li>• 다. 신기술·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li> </ul>

출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1호

<표 2-4> 사업규모별 기술인평가서(SO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 운영 기준

구분	설계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진단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단계	설계· 시공단계	
2.2억~10억	PQ	PQ	PQ	PQ	PQ+SOQ (2억 이상)
10억~15억	PQ+SOQ				
15억~20억	PQ+TP	PQ+SOQ	PQ+SOQ	PQ+TP	
20억~25억		PQ+TP			
25억 이상					

출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2호 재구성

-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에서는 발주청이 별표1에서 별표3까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①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 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참여기술인, 신용도, 업무중복도, 가점 항목에 기술인 관련 정량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5> [국토부]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참여기술인	(1) 책임기술인 [15]	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등급	4
		경력	7
		실적	8
	(3)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등급	4
		경력	5
		실적	5
(4) 참여기술인 [2]	교육훈련	1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소 계		50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유사 수행실적 건수	6	
	(2) 유사 수행실적 금액	6	
	(3) 전차 수행실적	1	
	(4) 수행 성과	2	
	소 계	15	
신용도	(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7	
	(2) 재정상태 건실도	3	
	소 계	1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2) 투자실적	10	
	(3) 활용실적	3	
	소 계	15	
업무중복도	(1) 책임기술인	3	
	(2) 분야별 책임기술인	4	
	(3) 분야별 참여기술인	2	
	(4) 실무기술인	1	
	소 계	10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1/0.2/0.3	
	젊은기술인 참여	0.1/0.15/0.2	
합 계		100	

\* 가점 합산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산정

출처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②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참여기술인, 신용도, 교체빈도, 가·감점 항목에 기술인 관련 정량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6> [국토부]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21~23)	등급	기준 미달시 실격
		해당분야 경력	15(11~13)
		직무분야 실적	9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23~24)	교육훈련	1
		해당분야 경력	15(13~14)
		직무분야 실적	9
	(3) 기술지원기술인 [10]	교육훈련	1
		등급	3
		해당분야 경력	6
	(4) 면접(발표)		1
소 계		(3~6)	
		60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유사 수행실적		8
	(2) 수행 성과		2
	소 계		10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7
	(2) 벌점 -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5
	(3) 재정상태 건실도		3
	소 계		1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활용실적		3
	(2) 투자실적		7
	소 계		10
교체빈도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3
	(2) 참여기술인		2
	소 계		5
가·감점**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별도 산식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1/0.2/0.3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1/-3/-5
		소 계	
합 계			100

\* ( )의 배점은 면접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적용

\*\* 가·감점 합산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산정

출처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③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3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참여기술인, 신용도, 업무중복도, 가점 항목에 기술인 관련 정량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7> [국토부]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참여기술인	(1) 책임기술인 [18]	등급	기준 미달시 실격
		경력	8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등급	2
		경력	6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	등급	2
		경력	3
		실적(건수)	4
	소 계		45
유사용역 수행실적	(1) 건수	12	
	(2) 금액	13	
	소 계	25	
신용도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2) 업무정지 - 참여기술인	3	
	(3) 재정상태 건실도	3	
	소 계	1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1	
	(2) 투자실적	8	
	(3) 활용실적	1	
	소 계	10	
업무중복도	(1) 책임기술인	6	
	(2)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4	
	소 계	10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1/0.2/0.3	
합 계		100	

\* 가점 합산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산정

출처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3

## (나) 적격심사낙찰제 평가체계

■ 적격심사낙찰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기준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 입찰가격, 기타 당해 사업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평가함.

- 적격심사낙찰제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시 적용하며, 운영 관련 사항은 다음 표의 법령 및 예규에 규정되어 있음.

<표 2-8> 적격심사낙찰제 유관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 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기재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5항 본문중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국토부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해당 고시에서는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은 후 가격입찰을 하는 경우(고시금액 이상 용역), 가격입찰참가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의 배점점수를 합한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함.
- 적격심사항목에서 기술인 관련 정량평가 항목은 ‘당해사업수행능력’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항목 점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하므로 별도 심사항목 및 배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단, 고시금액 미만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기술인 평가 항목이 포함된 별도 당해사업수행능력 심사항목 제시

<표 2-9> [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구 분		①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②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1억원 이상 고시 금액 미만의 정밀 안전진단 포함)	③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④ 3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
기준점수		95	95	90	85
계		100	100	100	100
당해 사업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70	80	80
	심사 항목	별도 부표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text{평점} = 30 / 100 \times$ 평가점수	$\text{평점} = 70 / 100 \times$ 평가점수	$\text{평점} = 80 / 100 \times$ 평가점수	$\text{평점} = 80 / 100 \times$ 평가점수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30	20	20
기타 당해 사업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 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 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출처 :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조에서 제5조, 별표1

#### (4)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체계

■ 종합심사낙찰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입찰가격, 용역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임.

- 종합심사낙찰제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중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용역,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용역,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적용하며, 운영 관련 사항은 다음 표의 법령 및 예규에 규정되어 있음.

\* 단, 지방계약법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한 종합심사(평가)낙찰제 미운영

<표 2-10> 종합심사낙찰제 유관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p><b>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b></p> <p>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li> <li>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li> <li>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용역</li> <li>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li> <li>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용역</li> </ol>
「(기재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p><b>제8조(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의 선정)</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내용·난이도·해당 용역의 시장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술역량 및 유사용역 수행 경험 등 기술적이행능력을 평가하여 선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평가적격자"라 한다)에 한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li> <li>② 제1항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li> </ol> <p><b>제9조(종합기술제안서 평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별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각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점수를 산정한다.</li> <li>②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는 [별표2], 종합점수 산정 및 가격평가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각각 심사하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평가한다.</li> </ol>

「(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세부평가기준)

- ① 발주청은 별표1에서 별표3까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사업분야 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② 발주청은 사업특성에 맞도록 별표1에서 별표3까지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③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발주청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에서 공지되는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발주청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사업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 기재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는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심사는 기술역량 및 유사용역 수행 경험 등 기술적이행능력을 평가하고, 선정된 자(평가 적격자)에 한하여 기술능력(종합기술제안서) 평가 및 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표 2-11> [기재부]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술적이행능력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기술적이행능력 평가기준	기술능력 평가	관리역량(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 등)	20~40
		기술역량(과업에 대한 전문성, 유사 용역평가결과 등)	30~50
		유사용역 수행실적	20~30
	계약 신뢰도	계약이행 관련 신뢰도(가·감점)	±1~±5(가·감점)
합 계			100

<표 2-12> [기재부]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종합점수 산정)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가중치(%)	
종합 기술제안서 평가	수 행 능 력	기술보유*	기술보유, 실적 등	10~30	80~95
		사업수행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20~40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10~30	
		직원 투입 계획		
	전문가 역량	해당용역에 투입되는 핵심 전문가 역량	20~60	
	사회적 책임 (가·감점)	인력고용(가점)	±2	
		공정거래(감점)		
평가 관련 신뢰도 (감점)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1~-10		
합 계			100	
입찰가격 평가	가격제안서 평가점수		100	5~20

\* 기술보유 평가는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점수 활용 가능

출처 :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1에서 별표3

■ 국토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음.

- 발주청은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건설엔지니어링 발주 시 해당 기준을 적용하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한 발주자 운영지침(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 등을 참고하여 발주청이 정하며,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의 20%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항목에서 기술인 관련 정량평가 항목은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내 '수행능력-전문가 역량'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표 2-13> [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2단계 평가방식\_기술적이행능력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적이행능력 평가기준	기술능력평가	관리역량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	20
			사업관리 운영체계	
			신용도 (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등)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50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심사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주관사의 유사 실적	30	
		공동참여사의 유사 실적		
	계약 신뢰도(감점)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작성위반 등	최대 -5	
합 계			100	

출처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1 및 별표3

<표 2-14> [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2단계 평가방식\_종합점수 산정)

구분	평가항목		배점*	가중치(%)**	
종합 기술제안서 평가	수 행 능 력	기술보유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점수	10	80~95 또는 100
		사업수행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2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10		
		직원 투입 계획			
	전문가 역량	건설엔지니어링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 역량	55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			
	사회적 책임 (가·감점)	인력고용(가점)	최대 +2		
		공정거래(감점)	최대 -2		
평가 관련 신뢰도 (감점)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제안서 작성위반 등	최대 -10			
합 계			100		
입찰가격 평가	가격제안서 평가점수		100	5~20 또는 0	

\* 평가항목별 배점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배점의 20% 이내에서 발주청이 조정 가능

\*\* 기술능력 평가 가중치는 80~95% 사이로 하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 적용 가능

출처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1 및 별표3

- 종합심사낙찰제 평가방식은 상기와 같이 2단계 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기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표 2-15> 종합심사낙찰제 통합 평가방식 적용 대상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4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자의 수가 10개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어 2차 심사 자격자를 선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li> <li>• 당해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입·낙찰 절차나 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li> <li>• 그 밖에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 또는 원활한 심사의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li> </ul>

<표 2-16> [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통합 평가방식)

구분	평가항목		배점*	가중치(%)**	
기술능력 평가 (종합기술 제안서 평가)	수 행 능 력	관리역량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	2	80~95 또는 100
			사업관리 운영체계		
			신용도(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등)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5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심사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주관사의 유사 실적	3		
		공동참여사의 유사 실적			
	사업수행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2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10		
		직원 투입 계획			
	전문가 역량	<b>건설엔지니어링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 역량</b>	55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					
사회적 책임 (가·감점)	인력고용(가점)	최대 +2			
	공정거래(감점)	최대 -2			
평가 관련 신뢰도 (감점)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최대 -10			
	제안서 작성위반 등				
합 계			100		
입찰가격 평가	가격제안서 평가점수		100	5~20 또는 0	

\* 평가항목별 배점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배점의 20% 이내에서 발주청이 조정 가능

\*\* 기술능력 평가 가중치는 80~95% 사이로 하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 적용 가능

출처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2 및 별표3

## 2. 소결 및 시사점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은 적격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을 위해 적정 자격을 갖춘 업체를 사전 심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사업수행능력 평가(PQ)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격심사 낙찰제는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종합심사 낙찰제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PQ) 대상 사업은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적격심사낙찰제 및 종합심사 낙찰제에서 기술인 평가체계는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기술인 평가체계와 관련성이 높음.
  - (적격심사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에서 기술인 관련 정량평가 항목은 ‘당해사업수행능력’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항목 점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함.
  - (종합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인 관련 정량평가 항목은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내 ‘수행능력-전문가 역량’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다수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기술인 평가항목 및 기준을 운영하고 있음.
- 이처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기술인 평가체계에 있어 사업수행능력(PQ) 평가체계 및 기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
- 따라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의 기술인 평가체계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세부평가기준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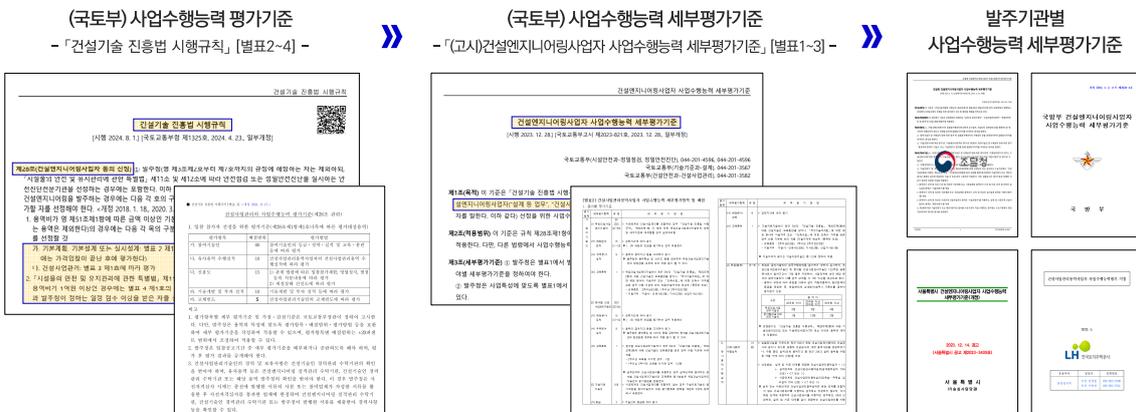
# III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분석

■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의 별표2에서 별표4를 통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사업자 선정 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제시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2에서 규정

- 각 발주기관(발주청)은 국토부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사업 발주 시 적용하고 있음.



<그림 3-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연계도

■ 따라서, 본 장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중심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기준을 참고하여 각 발주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부평가기준 비교·분석을 실시함.

## 1. 국토부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분석

■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그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는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교체빈도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범위 및 평가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음.

<표 3-1> [국토부]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60	•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 및 교육·훈련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5	•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벌점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0	•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에 따라 평가
마. 교체빈도	5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빈도에 따라 평가
합계	100	

출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

## 2. 국토부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분석

■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 그 중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에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교체빈도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평가항목, 배점범위 및 세부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표 3-2> [국토부]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21~23)	등급	기준 미달시 실격	
		해당분야 경력	15(11~13)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23~24)	해당분야 경력	15(13~14)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3) 기술지원기술인 [10]	등급	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1	
(4) 면접(발표)		(3~6)		
소 계			60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유사 수행실적		8	
	(2) 수행 성과		2	
	소 계		10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7	
	(2) 벌점 -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5	
	(3) 재정상태 건실도		3	
	소 계		1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활용실적		3	
	(2) 투자실적		7	
	소 계		10	
교체빈도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3	
	(2) 참여기술인		2	
	소 계		5	
가·감점**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별도 산식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1/0.2/0.3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1/-3/-5
		소 계		5점 이하
합 계			100	

\* ( )의 배점은 면접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적용

\*\* 가·감점 합산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산정

출처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 참여기술인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각 책임·분야별·기술지원기술인을 대상으로 ①등급, ②해당분야 경력, ③직무분야 실적, ④교육훈련에 대한 정량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등급) 기술인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 기술인의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함.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 등급 평가를 진행하지 않으며,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등급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표 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① 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2.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책임·분야별·기술지원기술인 모두 해당분야 경력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세부 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 제3호가목을 참조하여 결정

■ (직무분야 실적)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함.

-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직무분야 실적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세부 기준은 용역의 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직무분야 예시) 토목, 건축, 기계, 도시·교통, 환경 등

■ (교육훈련) 교육훈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 보유 유무를 기준으로 평가함.

- 책임·분야별·기술지원기술인 모두 교육훈련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교육훈련 이수 기간 및 기술자격 보유 유무에 대한 세부 기준이 존재함.

\* 단,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 기술자격 보유 여부에 대한 평가 제외

<표 3-4> [국토부]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여기술인’ 세부평가방법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책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li> </ul>
	해당분야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 공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li> <li>*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차등 적용</li> </ul>
	직무분야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li> <li>* (직무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 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li> <li>* 발주청은 용역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 평가</li> </ul>

발주기관별 건설기술인 평가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li> <li>-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li> </ul> </li> </ul>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 공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차등 적용</li> </ul> </li> </ul>
	직무분야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 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li> <li>* 발주청은 용역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 평가</li> </ul> </li> </ul>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li> <li>-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li> </ul> </li> <li>*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li> </ul>
기술지원 기술인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li> </ul>
	해당분야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 공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차등 적용</li> </ul> </li> </ul>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li> <li>-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li> </ul> </li> <li>*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li> </ul>

출처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 3. 발주기관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세부평가기준 비교·분석

■ 발주기관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세부평가기준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연간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규모, 주요 사업분야, 최근 사업 발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개 발주기관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함.

- 기관유형별 건설사업관리용역 연간 발주규모가 상위권인 기관을 선정하고, 기술인 평가기준 차이 비교를 위해 선정된 기관에서 최근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과 동일한 공사유형이면서 유사한 규모의 용역을 발주한 기관을 추가 선정함.

<표 3-5> 분석 대상 발주기관 현황

기관구분	기관명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건설사업관리 관련)
국가기관	조달청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2024. 4. 29. / 조달청지침 제3961호)
	국방부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2024. 1. 2. / 고시 제2024-1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4. 4.)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 (2023. 5.)
	국가철도공단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궤도/건축/차량 기지/기계설비 분야)(개정 2023. 12. 28.)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2023. 5. 4. / 경기도 공고 제2023-5497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2023. 12. 14.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405호)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2024. 2. 27.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413호)
지방공기업	경기주택도시공사(GH)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시행 2024. 2. 29.)

### (가) 기술인 등급 평가기준 비교·분석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 발주기관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제시된 해당공사 규모별 기준을 준용하여 제시하고 있음.**

- 해당용역의 공사규모에 따라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3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5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단, 해당용역 입찰공고 시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책임기술인의 등급 및 자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명시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국방부는 분야별 기술인에 대한 등급 평가를 진행하지 않으며, 그 외 기관들은 입찰공고 시 제시되는 등급 기준 미충족시 실격 처리함.**

- 단,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중급기술인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단함.

- (기술지원기술인) **조달청은 입찰공고 시 등급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외 기관들은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특급, 300억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 고급이상 기술인에 대해 만점을 부여함.**

### (나) 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평가기준 비교·분석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제외한 모든 기관은 해당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만점 기준을 차등 적용함.**

- (국방부·조달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국가철도공단·경기도·광주광역시) 6개 기관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1,000억원 이상 공사 기준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함.

- (서울특별시·경기주택도시공사(GH)) 2개 기관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1,000억원 이상 공사 기준 해당분야 경력 11년 이상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함.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당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함.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대부분의 기관은 해당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술인에 대한 요구 등급을 기준으로 만점 기준을 차등 적용함.**

- (조달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광역시·경기주택도시공사(GH)) 4개 기관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300억원 이상 공사 기준 해당분야 경력 48개월 이상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함.
- (국방부) 300억원 이상 공사 기준 해당분야 경력 72개월 이상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함.
- (서울특별시) 300억원 이상 공사 기준 해당분야 경력 32개월 이상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함.
- (경기도) 타 기관과 달리 해당공사 규모를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1,000억원 이상 공사 기준 해당분야 경력 84개월 이상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함.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술인에 대한 요구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요구 등급이 특급인 사업의 경우, 해당분야 경력 48개월 이상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함.
- (국가철도공단) 해당공사 규모 또는 기술인 요구 등급과 관계없이 해당분야 경력 48개월 이상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함.

■ **(기술지원기술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제외한 모든 기관은 해당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만점 기준을 차등 적용함.**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 8개 기관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1,000억원 이상 공사 기준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함.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당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함.

<표 3-6>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급' 평가 만점 기준 비교·분석

구분	해당공사 규모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국방부	조달청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한국토지 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경기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책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500억원 이상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한국토지 주택공사	국가철도 공단	입찰공고 시 제시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경기주책 도시공사	
	300억원 이상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입찰공고 시 제시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00억원 이상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입찰공고 시 제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 제외	입찰공고 시 제시	중급기술인 이상			입찰공고 시 제시	입찰공고 시 제시		
	300억원 이상	특급기술인	입찰공고 시 제시				특급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300억원 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입찰공고 시 제시				고급기술인 이상			

<표 3-7>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평가 만점 기준 비교·분석

구분	해당공사 규모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국방부	조달청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한국토지 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경기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주택 도시공사		
책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1,000억원 이상		15년 이상			15년 이상		15년 이상		15년 이상		11년 이상
	500억원 이상		13년 이상		5년 이상	13년 이상		9년 이상		13년 이상		9년 이상
	300억원 이상		11년 이상			11년 이상		7년 이상		11년 이상		7년 이상
	300억원 미만		9년 이상			9년 이상		5년 이상		9년 이상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1,000억원 이상				특급	48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500억원 이상	72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72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300억원 이상				고급	36개월 이상		60개월 이상				
	100억원 이상	60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100억원 미만	4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중급 이하	24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기술지원 기술인	1,000억원 이상		15년 이상							15년 이상		
	500억원 이상		13년 이상		4년 이상					13년 이상		
	300억원 이상		11년 이상							11년 이상		
	300억원 미만		9년 이상							9년 이상		
기타 사항		국방시설	-	-	-	-	-	-	-	-	-	-
		수행경력 인정을 적용										

■ (기타 사항) 국방부는 타 기관과 달리 예외적으로 각 기술인에 대한 해당분야 경력 평가점수에 ‘국방시설 수행경력 인정률’ 을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 인정률 적용대상 사업에 대해 책임 및 기술지원기술인은 9년 이상, 분야별 기술인은 6년 이상의 국방시설 수행경력을 보유해야만 해당분야 경력 평가점수를 100% 인정받을 수 있음.

\* (예시) 500억원 이상 병영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에 대해, 해당분야 경력 15년을 보유한 책임 기술인의 경우 만점인 12.5점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때, 해당 기술인의 국방시설 수행 경력이 7년이라면 12.5점의 95%만 점수로 인정받아 11.87점으로 해당분야 경력 점수 최종 확정

<표 3-8> 국방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인정률 적용 기준

평가 대상	세부평가기준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군사시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행경력에 따라 적용대상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률을 적용하며, 국방·군사시설의 시설유형에 따라 인정률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분야별 책임/기술지원기술인을 입찰공고 시 지정하여 공고하고 차등하여 평가</li> </ul>													
인정률 적용 대상	구분	비밀/방위력 개선 사업 시설	부대 개편/이전 사업 시설	대미 사업 시설	작전/훈련/교육/저장 시설	방호 시설	병영 시설	행정 시설	정비 시설	위생/급식 시설	주거 시설	의료/교정 시설	복지 시설	기타 시설
	적용 대상	책임기술인 1인 + 분야별기술인 1~2인 + 기술지원기술인 2인					책임기술인 1인					-		
인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분야 경력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행경력 중 설계, 시공, 품질 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의 수행경력</li> </ul>													
	인정률	100%		95%		90%		85%		80%				
	책임/기술지원	9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분야별기술인	6년 이상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계산	해당분야 경력평가점수 × 인정률													

## (다) 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평가기준 비교·분석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국방부는 해당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그 외 8개 기관은 기술인에 대한 요구 등급을 기준으로 만점 기준을 차등 적용함.

- (국방부)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직무분야 실적 15년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12년 이상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함.
- (조달청)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요구 등급이 특급인 사업의 경우, 직무분야 실적 15년 이상, 요구 등급이 고급 이하인 사업인 경우 12년 이상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함.
-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가철도공단) 2개 기관은 해당공사 규모 또는 기술인 요구 등급과 관계 없이 직무분야 실적 각 15년, 12년 이상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함.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경기도·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경기주택도시공사(GH)) 5개 기관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요구 등급이 특급인 사업의 경우, 제시하고 있는 담당업무(건설공사업무)에 대한 직무분야 실적 15년 이상 및 설계를 제외한 담당업무에 대한 실적 7년 이상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함.
- 요구 등급이 고급 이하인 사업의 경우, 제시하고 있는 담당업무에 대한 직무분야 실적 12년 이상 및 설계를 제외한 담당업무에 대한 실적 5년 이상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함.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 기술인과 유사하게 국방부는 해당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그 외 8개 기관은 기술인에 대한 요구 등급을 기준으로 만점 기준을 차등 적용함.

- (국방부) 300억원 이상 공사 기준, 직무분야 실적 12년 이상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함.
- (조달청)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요구 등급이 특급인 사업 기준, 직무분야 실적 10년 이상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함.
-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가철도공단) 2개 기관은 기술인 요구 등급이 특급인 사업 기준, 직무분야 실적 12년 이상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함.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기술인 요구 등급이 특급인 사업 기준, 제시하고 있는 담당업무에 대한 직무분야 실적 8년 및 설계를 제외한 담당업무에 대한 실적 3년 이상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함.
- (서울특별시) 기술인 요구 등급이 특급인 사업 기준, 제시하고 있는 담당업무에 대한 직무분야 실적 9년 및 설계를 제외한 담당업무에 대한 실적 4년 이상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함.
- (경기도·광주광역시·경기주택도시공사(GH)) 3개 기관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요구 등급이 특급인 사업 기준, 제시하고 있는 담당업무에 대한 직무분야 실적 12년 및 설계를 제외한 담당업무에 대한 실적 5년 이상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함.

■ (기술지원기술인) 조달청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는 기술지원기술인에 대한 직무분야 실적 평가를 진행하지 않음.

- (조달청) 기술지원기술인에 대해 직무분야 실적 15년 이상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함.

<표 3-9>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평가 만점 기준 비교·분석(1)

구분	해당공사 규모	국가기관	요구 등급	국가기관	공공기관	
		국방부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책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300억원 이상	15년 이상	특급	15년 이상	15년 이상	12년 이상
	300억원 미만	12년 이상	고급 이하	12년 이상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300억원 이상	12년 이상	특급	10년 이상	12년 이상	12년 이상
	100억원 이상	10년 이상	고급	8년 이상	8년 이상	10년 이상
	100억원 미만	8년 이상	중급 이하	6년 이상	3년 이상	8년 이상
기술지원 기술인	-	평가 제외	-	15년 이상		평가 제외

<표 3-10>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평가 만점 기준 비교·분석(2)

구분	요구 등급	담당업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경기도	서울 특별시	광주 광역시	경기주택 도시공사
책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특급	설계 포함	15년 이상				
		설계 미포함	7년 이상				
	고급 이하	설계 포함	12년 이상				
		설계 미포함	5년 이상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특급	설계 포함	8년 이상	12년 이상	9년 이상	12년 이상	
		설계 미포함	3년 이상	5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고급	설계 포함	8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이상	
		설계 미포함	3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중급 이하	설계 포함	8년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8년 이상	
		설계 미포함	3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기술지원 기술인	-	-	평가 제외				

(라) 기술인 교육훈련 평가기준 비교·분석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쉰 기관이 교육훈련 이수 및 기술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평가함.

- (교육훈련) 쉰 기관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2주(70시간) 이상 받은 경우 만점을 부여함.
- (기술자격) 대부분의 기관이 기술사 또는 건축사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경기도의 경우 기술사 보유 시에만 만점을 부여함.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주요 사업분야가 도로건설이므로, 타 기관과 달리 건축사 보유를 만점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쉰 기관이 교육훈련 이수 여부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자격 보유 여부는 평가하지 않음.

- (교육훈련) 쏘 기관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2주(70시간) 이상 받은 경우 만점을 부여함.

■ (기술지원기술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동일하게 쏘 기관이 교육훈련 이수 및 기술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평가함.

- (교육훈련) 쏘 기관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2주(70시간) 이상 받은 경우 만점을 부여함.
- (기술자격) 대부분의 기관이 기술사 또는 건축사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경기도의 경우 기술사 보유 시에만 만점을 부여함.

<표 3-11>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교육훈련’ 평가 만점 기준 비교·분석

구분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업
		국정부	조달청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국가 철도 공단	경기도	서울 특별시	광주 광역시	경기 주택 도시 공사
책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교육훈련 (최근 3년)	2주(70시간) 이상								
	기술자격	기술사·건축사 보유	기술사 보유	기술사·건축사 보유	기술사 보유	기술사·건축사 보유	기술사 보유	기술사·건축사 보유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교육훈련 (최근 3년)	2주(70시간) 이상								
	기술자격	평가 제외								
기술지원 기술인	교육훈련 (최근 3년)	2주(70시간) 이상								
	기술자격	기술사·건축사 보유	기술사 보유	기술사·건축사 보유	기술사 보유	기술사·건축사 보유	기술사 보유	기술사·건축사 보유		

\* 단,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또는 철도안전전문기관에 따른 건설 기술인 교육훈련(레도분야는 한국철도시설협회 교육훈련 포함)을 이수한 정도

## 4. 소결 및 시사점

-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 세부평가기준에서 참여기술인 평가항목은 등급,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교육훈련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책임·분야별·기술지원기술인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등급 및 교육훈련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은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 항목에 대해서는 용역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각 발주기관(발주청)은 국토부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지침)을 수립하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사업 발주 시 적용하고 있음.
- 발주기관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9개 발주기관을 선정하여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세부평가 기준 비교·분석을 실시함.
  - 분석 결과, 등급 및 교육훈련 항목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기관 간 큰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 항목에 대해서는 기관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체계 및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국토부 세부평가기준에서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 항목에 대해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발주기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발주기관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는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 항목 평가 시 요구되는 경력 및 실적 기간(년 또는 개월)이 제시되어

있으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하는 세부 인정범위는 발주되는 공사종류에 따라 입찰 공고 시 제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때문에, 보다 상세한 발주기관별 기술인 세부평가기준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발주 공사종류별 발주기관의 입찰공고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IV

## 발주기관별 입찰공고문 비교·분석

- 발주기관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실제 입찰 공고 시 적용하고 있는 기술인 평가기준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① 공동주택(아파트), ② 업무시설, ③ 도로분야에 대한 최근 발주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공고문을 검토함.
  - 제4장 발주기관별 기술인 세부평가기준 분석 결과, 평가항목별 점수산정 기준을 해당공사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동일 공사종류(시설물 유형)에 대해 공사규모가 유사한 사업을 선별함.
  -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국방부·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 업무시설의 경우,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도로분야의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경기도에서 발주한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함.

## 1. 공동주택(아파트) 입찰공고문 비교·분석

- 공사규모가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동주택(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3건에 대한 입찰공고문 분석을 실시함.

&lt;표 4-1&gt;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공고 목록

발주기관	공고일	공고명	용역금액(원)	공사규모(원)
국방부	2024-03-13	24-D-간부숙소 신축 건설사업관리용역(B004)	1,513,588,000	16,900,000,000
한국토지 주택공사	2024-03-27	청주내덕 공동주택 건설공사 1공구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3,395,690,000	17,700,000,000
경기주택 도시공사	2023-11-13	연천BIX 경기행복주택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2,162,600,000	10,998,000,000

##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만점 기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등급 만점 기준 분석 결과, 3개 기관 모두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을 준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공사규모가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이므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을 보유한 ‘고급’ 이상 기술인에 대해 만점을 부여함.

<표 4-2> [공동주택]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만점 기준

평가항목	국방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급	고급 이상		
경력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		

## ②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만점 기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해당분야 경력 만점 기준 분석 결과, 3개 기관 간 만점 경력 기준 및 인정 범위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경력 기준) 국방부는 가장 높은 9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기주택 도시공사(GHD)는 7년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가장 낮은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함.
- (경력 인정범위) 발주기관 간 경력 인정 공사종류 및 담당업무가 상이함.
  - (국방부) ‘교정 및 군사시설’ 및 ‘공동주택’ 경력을 100%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 건설공사 경력에 대해서도 60%를 인정하고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대해 담당업무가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공무, 품질부문인 경력을 100% 인정하고 있음.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동주택’에 대해 담당업무가 감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인 경력을 100%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60%를 인정하고 있음.

- 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공동주택’ 경력 이더라도, 담당업무가 감리(건축법), 감리(주택법)인 경우에는 60%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기관과 차이가 있음.

■ (기타 사항) 국방부는 해당분야 경력 평가점수에 ‘국방시설 수행경력 인정률’ 을 별도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 때문에, 해당분야 경력 평가 만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군 발주공사 경력 9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음.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만점 기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직무분야 실적 만점 기준 분석 결과, 3개 기관 간 실적 만점 기준 및 인정 범위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실적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가장 높은 15년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12년 이상,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담당업무에 따라 12년 및 5년 이상의 실적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음.

■ (실적 인정범위) 공동주택에 대한 용역이므로, 직무분야는 ‘건축’ 으로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발주기관 간 실적 인정 담당업무가 상이함.

- (국방부)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등 거의 대부분의 담당업무에 대한 건축 직무 실적 12년 이상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업무와 무관하게 건축 직무 실적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평가 시 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전문분야별 인정 일수 현황’ 을 기준으로 건축 직무 실적 15년 이상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경기주택도시공사) 설계, 견적, 시공, 건설사업관리, 감리(건축법, 주택법), 관리감독 등 담당업무에 대한 건축 직무 실적 12년 이상, 설계를 제외한 담당업무에 대한 건축 직무 실적 5년 이상을 모두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표 4-3> [공동주택]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만점 기준

평가항목	국방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력	9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공사종류	교정 및 군사시설, 공동주택	공동주택(아파트)	공동주택
경력 100% 인정 범위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공무, 품질부문	감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감리(건설기술관리법)
공사종류	그 외 건설공사	-	그 외 건설공사
경력 60% 인정 범위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	-	감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감리(건설기술관리법), 시공
경력	9년 이상	-	-
인정률	인정범위	-	-

\* 단,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정도' 상주(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기술인, 상주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경력만 인정

<표 4-4> [공동주택]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만점 기준

평가항목	국방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실적	12년 이상	15년 이상	12년 이상
직무분야	건축	건축	건축
실적 인정 범위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	무관	설계, 건축, 시공, 품질·안전·환경관리, 화약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건축법, 주택법), 관리감독
기타	-	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현황으로 평가	-

\* 단,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정도' 상주(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기술인, 상주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경력만 인정

#### ④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만점 기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 만점 기준 분석 결과, 3개 기관 모두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2주(7시간) 이상 이수하고, 기술사 또는 건축사를 보유한 기술인에 대해 만점을 부여함.

<표 4-5> [공동주택]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만점 기준

평가항목	국방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교육훈련	2주(7시간) 이상		
기술자격	기술사·건축사 보유		

## 2. 업무시설 입찰공고문 비교·분석

■ 공사규모가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업무시설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2건에 대한 입찰공고문 분석을 실시함.

<표 4-6> [업무시설]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공고 목록

발주기관	공고일	공고명	용역금액(원)	공사규모(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4-07-03	이문2동 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독권한대행)	2,502,000,000	20,887,000,000
광주광역시 북구	2024-03-26	북구청사 신관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744,080,000	22,000,000,000

####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만점 기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등급 만점 기준 분석 결과, 서울특별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을 준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반면, 광주광역시를 해당 기준보다 높은 등급을 요구함.

- 공사규모가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이므로 서울특별시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을 보유한 '고급' 이상 기술인에 대해 만점을 부여함.
- 광주광역시는 공사규모가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을 보유한 '특급' 기술인에 대해 만점을 부여함.

<표 4-7> [업무시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만점 기준

평가항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광주광역시 북구
등급	고급 이상	특급
경력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	

## ②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만점 기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해당분야 경력 만점 기준 분석 결과, 2개 기관 간 만점 경력 기준 및 인정 범위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경력 기준) 서울특별시는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광주광역시는 9년의 경력을 요구함.
- (경력 인정범위) 발주기관 간 경력 인정 공사종류 및 담당업무가 상이함.
  - (서울특별시) '업무시설'에 대해 담당업무가 설계,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인 경력을 100% 인정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에 대해 담당업무가 설계,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등인 경력을 100%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60%를 인정하고 있음.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만점 기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직무분야 실적 만점 기준 분석 결과, 2개 기관 간 실적 만점 기준 및 인정 범위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실적 기준) 서울특별시는 담당업무에 따라 12년 및 5년 이상의 실적, 광주광역시는 담당업무에 따라 15년 및 7년 이상의 실적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음.
- (실적 인정범위) 업무시설에 대한 용역이므로, 직무분야는 ‘건축’ 으로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발주기관 간 실적 인정 담당업무가 상이함.
  - (서울특별시) 설계,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담당업무에 대한 건축 직무 실적 12년 이상, 설계를 제외한 담당업무에 대한 건축 직무 실적 5년 이상을 모두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 설계,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등 담당업무에 대한 건축 직무 실적 15년 이상, 설계를 제외한 담당업무에 대한 건축 직무 실적 7년 이상을 모두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표 4-8> [업무시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만점 기준

평가항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광주광역시 북구
경력		5년	9년
경력 100% 인정 범위	공사종류	업무시설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담당업무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60% 인정 범위	공사종류	-	그 외 건설공사
	담당업무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 단,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정도' 상주(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기술인, 상주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경력만 인정

<표 4-9> [업무시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만점 기준

평가항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광주광역시 북구
실적		12년 이상	15년 이상
실적 인정 범위	직무분야	건축	건축
	담당업무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 단,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정도' 상주(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기술인, 상주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경력만 인정

#### ④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만점 기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 만점 기준 분석 결과, 2개 기관 모두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2주(7시간) 이상 이수하고, 기술사 또는 건축사를 보유한 기술인에 대해 만점을 부여함.

<표 4-10> [업무시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만점 기준

평가항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광주광역시 북구
교육훈련	2주(70시간) 이상	
기술자격	기술사·건축사 보유	

### 3. 도로분야 입찰공고문 비교·분석

- 공사규모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2건에 대한 입찰공고문 분석을 실시함.

<표 4-11>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공고 목록

발주기관	공고일	공고명	용역금액(원)	공사규모(원)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2024-04-01	빛그린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3,412,000,000	67,742,000,000
경기도 안성시	2023-12-13	군도9호선(마석~송천) 도로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5,642,890,000	73,730,000,000

####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만점 기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등급 만점 기준 분석 결과, 2개 기관 모두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을 준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공사규모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이므로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을 보유한 '특급' 기술인에 대해 만점을 부여함.

<표 4-12> [도로분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만점 기준

평가항목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안성시
등급	특급	
경력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	

## ②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만점 기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해당분야 경력 만점 기준 분석 결과, 2개 기관 간 만점 경력 기준은 13년 이상으로 동일하나, 인정 범위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경력 인정범위) 발주기관 간 경력 인정 공사종류 및 담당업무가 상이하며, 특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경력인정 발주기관(시행기관) 범위를 제시하고 있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부, 행복청, 새만금청 등 특정 발주기관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에 대해 담당업무가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관리감독인 경력을 100%, 설계 경력을 80% 인정하고 있음.
  -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에 대해 담당업무가 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관리감독인 경력을 80%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경력 70%, 60% 인정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 '도로·교량·터널·지하차도'에 대해 담당업무가 건설사업관리, 시공, 공사감독 등인 경력을 100% 인정하고 있으며, 동일 공사종류에 대해 담당업무가 설계, 설계용역 감독, 기술지원기술인, 시험, 검사 등인 경력을 80% 인정하고 있음.
  - 또한, 그 외 기타분야에 대해서도 담당업무가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등인 경력을 60% 인정하고 있음.

<표 4-13> [도로분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만점 기준

평가항목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안성시	
경력		13년		13년	
경력 100% 인정 범위	공사종류	국토부, 행부청, 새만금청,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시행 도로건설공사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담당업무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감리, 시공, 발주청에서의 관리감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시공(품질, 안전 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에서의 공사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80% 인정 범위	공사종류	국토부, 행부청, 새만금청,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시행 도로건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시행 도로건설공사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담당업무	설계	설계,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감리, 시공, 발주청에서의 관리감독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청에서의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기술지원기술인, 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70% 인정 범위	공사종류	그 외 국가, 공공기관 시행 도로건설공사	도로분야	-	
	담당업무	설계,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감리, 시공, 발주청에서의 관리감독	계획·시험·검사, 기술지원감리, 기술자문, 연구, 교육기관 강의	관리자	
경력 60% 인정 범위	공사종류	그 외 토목분야	해외 시행 토목분야	도로분야 (교량, 터널 포함)	
	담당업무	설계, 시공, 안전·품질,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보수 및 보강,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경력, 감리, 기술자문	기술자문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만점 기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직무분야 실적 만점 기준 분석 결과, 2개 기관 간 실적 만점 기준은 담당업무에 따라 15년 및 7년 이상으로 동일하나 실적 인정 범위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실적 인정범위) 업무시설에 대한 용역이므로, 직무분야는 ‘토목’ 으로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발주기관 간 실적 인정 담당업무가 상이함.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설계, 시공,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유지보수 및 보강, 사업관리, 감독, 자문 및 강의 담당업무에 대한 토목 직무 실적 15년 이상, 설계를 제외한 담당업무에 대한 토목 직무 실적 7년 이상을 모두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경기도)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담당업무에 대한 토목 직무 실적 15년 이상, 설계를 제외한 담당업무에 대한 토목 직무 실적 7년 이상을 모두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표 4-14> [도로분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만점 기준

평가항목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안성시	
실적		15년 이상	7년 이상	15년 이상	7년 이상
실적 인정 범위	직무분야	토목	토목	토목	토목
	담당업무	설계, 시공,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유지보수 및 보강, 사업관리, 감독, 자문 및 강의	시공,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유지보수 및 보강, 사업관리, 감독, 자문 및 강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단,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정도’ 상주(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기술인, 상주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경력만 인정

#### ④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만점 기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 만점 기준 분석 결과, 2개 기관 모두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2주(7시간) 이상 이수하고, 기술사를 보유한 기술인에 대해 만점을 부여함.

<표 4-15> [도로분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만점 기준

평가항목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안성시
교육훈련	2주(70시간) 이상	
기술자격	기술사 보유	

## 4. 소결 및 시사점

■ 발주기관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실제 입찰 공고 시 적용하고 있는 기술인 평가기준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 도로분야에 대한 최근 발주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공고문을 검토함.

- 입찰공고문 비교·분석은 동일 공사종류(시설물 유형)에 대해 공사규모가 유사한 사업을 선별하여 진행하였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만점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함.

■ 입찰공고문 분석 결과, 해당분야 경력에 대한 요구 경력 기간(년수), 공사종류 및 담당업무 인정범위가 매우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높은 경력 기간을 요구하는 발주기관의 경우,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공사종류 및 담당업무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있으며, 비교적 낮은 경력 기간을 요구하는 발주기관은 경력 인정 범위를 다소 제한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예컨대,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대신 공동주택 중 아파트 수행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때 담당업무 또한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공무, 품질부문으로 한정하고 있음.

- 반면, 국방부는 9년 이상의 비교적 높은 경력을 요구하는 대신, 공동주택과 교정 및 군사시설 수행경력 년수를 100%, 그 외 건설공사 수행경력 년수에 대해서도 60%를 인정해주고 있으며, 이 때 담당업무 또한 설계, 시공, 품질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에서부터 기술지원, 행정지원 등까지 대부분의 담당업무에 대해 경력을 인정하고 있음.

■ **직무분야 실적에 대해서는 직무분야 인정범위는 동일하나, 요구 실적 기간(년수), 담당업무 인정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직무분야 인정범위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업무시설의 경우 ‘건축’, 도로분야의 경우 ‘토목’ 으로 쏠 발주기관이 동일함.
- 다만, 요구 실적 기간(년수) 및 담당업무 인정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특히, 익산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에 해당되는 경기도·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각 기관에서 제시한 담당업무에 대한 직무분야 실적 년수와 제시한 담당업무에서 설계를 제외했을 때의 직무분야 실적 년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는, 발주기관에서 설계업무 수행 실적만으로 요구 실적 년수를 충족한 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입찰공고문 비교·분석 결과, 발주기관별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에 대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평가체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입찰참가 과정에서 건설기술인 및 기업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업수행능력을 보유한 기술인이 특정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는 참여가 불가능한 불합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V 기술인 평가체계 개선방안 제안

### 1. 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 세부평가방법 규정

① (문제점) 발주기관별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평가기준 및 인정범위 차이 과다

■ 현재 국토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는 참여기술인 ‘등급’, ‘교육훈련’ 평가에 대한 세부평가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에 대해서는 용역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에서 규정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 때문에, 등급 및 교육훈련 평가항목에 대해 대다수 발주기관이 국토부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면,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 평가항목의 경우, 유사 규모의 동일 공사종류에 대해서도 발주기관별 참여기술인 요구 경력 및 실적 기간, 경력 및 실적 인정범위(공사종류, 담당업무 등)가 매우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5-1> [현황] 발주기관별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 기준 차이

발주공사 종류	평가항목	인정범위	국방부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주택 도시공사	
총 공사비 300억원 미만 공동주택	해당분야 경력	요구 경력	9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공사 종류	100%	교정 및 군사시설, 공동주택	공동주택(아파트)	공동주택
			60%	그 외 건설공사	-	그 외 건설공사, 공동주택(건축법, 주택법)
	직무분야 실적	요구 실적	12년 이상	15년 이상	12년 이상(설계 포함) 5년 이상(설계 제외)	
		직무분야	건축	건축	건축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만점 기준이며, 담당업무 인정범위 생략

② (개선방안) 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 세부평가방법 규정

■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에서 참여기술인에 대한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평가방법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발주기관별 평가기준 및 인정범위 차이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개선할 수 있음.

- (해당분야 경력) 발주 공사종류(시설물 유형)별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하는 ‘공사종류’ 및 ‘담당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최대 요구 경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 (직무분야 실적) 발주 공사종류(시설물 유형)별 직무분야 실적으로 인정하는 ‘담당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최대 요구 경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표 5-2> [예시] 해당분야 경력 세부평가방법 규정(안)

대상		해당분야 경력 세부평가방법				
책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li> <li>*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차등 적용</li> </ul>				
		↓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li> <li>* 발주청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된 최대 요구 경력 내에서 경력 기간을 차등 적용하되, 발주공사 종류별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는 제시된 사항을 준수</li> </ul>				
		발주공사 종류	최대 요구 경력	인정범위		
				인정률	공사종류	담당업무
공동주택 (아파트)		10년	100%	공동주택(아파트)	설계, 시공, 품질부문,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60%	그 외 건설공사			
업무시설 (공공)	10년	100%	업무시설(공공, 일반)	설계, 시공, 품질부문,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60%	그 외 건설공사			
⋮						

<표 5-3> [예시] 직무분야 실적 세부평가방법 규정(안)

대상		직무분야 실적 세부평가방법			
책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li> <li>* (직무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li> <li>* 발주청은 용역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 평가</li> </ul>			
		↓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li> <li>* (직무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li> <li>* 발주청은 용역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제시된 최대 요구 실적 내에서 실적 기간을 차등 적용하되, 발주공사 종류별 직무분야 실적 인정범위는 제시된 사항을 준수</li> </ul>			
		발주공사 종류	최대 요구 실적	인정범위 직무분야	인정범위 담당업무
		공동주택 (아파트)	10년 15년	건축	설계, 시공, 품질부문,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품질부문,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업무시설 (공공)	10년 15년	건축	설계, 시공, 품질부문,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품질부문,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				

- 단, 세부평가방법 규정 시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세부평가방법을 규정해야 하며, 일률적인 평가방법이 아닌, 공사종류별 특성이 반영된 기준을 제시해야 함.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에 대한 공사종류별 적정 세부평가방법 수립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합리적인 세부평가방법 수립을 위해 건설기술인, 엔지니어링기업, 발주기관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임.**

- 또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국토부와와의 협의 및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

## 2. 건설기술인 자기평가 시스템 개발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

① (문제점) 기술인 평가체계 복잡 및 평가항목별 인정범위 불명확으로 인해 건설 기술인의 자기평가 어려움 존재

■ 각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입찰공고문 상에 기술인 평가체계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발주기관별 평가체계가 매우 상이하며, 인정 범위에 대해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의 분류기준에 맞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때문에, 기술인 개별적으로 본인의 평가점수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업무 경험이 풍부한 기업 담당자가 만점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을 선별하여 배치함.

<표 5-4> [현황]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불명확

대상	해당분야 경력 세부평가방법
발주기관 제시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례) 1) 당해용역의 주된 공종이 건축인 아파트 건설공사 - 건진법에 의한 아파트 감독 권한대행 등 상주건설사업관리(발주청 소속의 공사감독 또는 공사관리관 또는 공사사업관리(이하 “감독 및 사업관리” 이라 한다.))경력 : 100%인정 - 건진법 이외법에 의한 아파트 상주감리(감독 및 사업관리) 경력 : 100%인정 - 아파트 현장대리인·현장소장·시공관리책임자(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 시공, 공무, 품질부문 경력 : 100%인정

↓ 경력증명서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인정범위 자체적 해석 필요 ↓

자체 해석 및 검토	발주공사 종류	담당업무 (건설공사업무)	책임정도	인정 여부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주기술인	○
기술지원기술인			X	
감리(건축법)		책임기술인, 분야기술인, 상주(건축사보)기술인	○	
		기술지원기술인	X	
감리(주택법)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X	
감독		공사감독	○	
⋮	⋮	⋮		

발주기관별 건설기술인 평가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경력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감리용역 참여 경력만 해당합니다.					
참여기간 (인정일) (참여일)	사업명 발주자	공사종류 공법	직무분야 전문분야	담당업무 직위	비고
공사(용역)개요		책임정도		공사(용역)금액(백만원)	
2005.07.07 (주) 건설 (694일) (694일)	재건축조립아파트신축공사감리용역	공동주택(아파트)	건축	감리(주택법)	100% 인정
2009.04.17	청라지구 아파트신축공사	공동주택(아파트)	건축	감리(주택법)	100% 인정
2014.01.01	아파트신축공사감리용역	공동주택(아파트)	건축	감리(주택법)	100% 인정
2016.08.09	의정부 신축공사 감리용역	공동주택 공동주택(아파트)	건축	감리(주택법)	100% 인정

② (개선방안) 건설기술인 자기평가 시스템 개발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

■ 발주기관별 평가체계 및 기준에 맞게 개별 건설기술인의 평가항목별 점수가 자동으로 산출되는 자기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건설기술인 및 입찰참가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경력 개발 전략 수립 및 입찰참가 준비 효율성 제고가 가능함.

- (건설기술인) 개별 건설기술인이 각 발주기관 사업에 대한 본인의 평가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술인 스스로 경력 개발 전략 수립이 가능함.
- (기업) 각 발주기관 사업에 대해 기술인 평가 만점 기준 충족 소속 기술인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소속 기술인 관리 및 입찰참가 준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성명 : ○○○ / 생년월일 : 0000. 00. 00 / 건설사업관리 등급 : 건축분야 □ 고급 기술인 / 근무처 : ○○ 엔지니어링      조회일 : 0000. 00. 00

발주기관		국방부									
공사규모		300억 미만				공사종류		공동주택(아파트)			
구분		등급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교육훈련		합계	상세 보기
		등급	점수	연수	점수	연수	점수	시간	점수		
책임	만점기준	고급이상	적/부	9년 이상	15.0	12년 이상	9.0	70시간	1.0	25.0	클릭
	본인	고급	적격	8년	13.5	11년	8.1	70시간	1.0	22.6	
분야별	만점기준	고급이상	적/부	5년 이상	15.0	10년 이상	9.0	70시간	1.0	25.0	클릭
	본인	고급	적격	8년	15.0	11년	9.0	70시간	1.0	25.0	
기술 자원	만점기준	고급이상	3.0	9년 이상	6.0	-	-	70시간	1.0	10.0	클릭
	본인	고급	3.0	8년	5.4	-	-	70시간	1.0	9.4	

<그림 5-1> [예시] 건설기술인 자기평가 시스템 구성(안) - 자기평가

기업명 : ○○ 엔지니어링      조회일 : 0000. 00. 00

발주기관		국방부									
공사규모		300억 미만		공사종류		공동주택(아파트)		기술인 유형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No	성명	등급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자격증	적격여부	경력증명서				
1	김○○	특급	15년	20년	건축사공기술사	적격	클릭				
2	박○○	특급	10년	15년	건축사공기술사	적격	클릭				
3	이○○	고급	12년	16년	건축사공기술사	적격	클릭				
4	최○○	특급	9년	13년	건축사	적격	클릭				
5	황○○	고급	13년	17년	건축사공기술사	적격	클릭				

<그림 5-2> [예시] 건설기술인 자기평가 시스템 구성(안) - 소속 기술인 평가

- 건설기술인 자기평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주요 발주기관 선정, 발주기관별 세부평가기준 분석, 시스템 이용자별 정보 제공 항목 발굴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성 등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효용성 높은 시스템 개발을 위해 건설기술인, 엔지니어링기업, 발주기관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임.
-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기술인 데이터와 연계하여 해당 시스템 구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VI

## 결론

- 본 연구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중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발주기관별 기술인 평가체계 및 기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평가체계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건설기술인 권익 보호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됨.
  - 이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별 평가체계 및 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검토하였으며, 건설사업 주요 발주기관별 세부평가기준 비교·분석을 통해 기술인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기술인 평가체계에 있어 사업수행능력(PQ) 평가체계 및 기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적격심사낙착제 및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기술인 평가체계는 사업수행능력 평가(PQ)와 관련성이 높음.
  - 둘째, 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세부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등급 및 교육훈련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은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 항목에 대해서는 용역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셋째, 발주기관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비교·분석 결과, 등급 및 교육훈련 항목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기관 간 큰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 항목에 대해서는 기관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체계 및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넷째, 보다 상세한 발주기관별 기술인 세부평가기준 비교·분석을 위해 발주 공사종류별 입찰공고문 분석 결과, 발주기관별 해당분야 경력에 대한 요구 경력 기간(년수), 공사종류 및 담당업무 인정범위가 매우 상이하며, 직무분야 실적에 대해서도 직무분야 인정범위는 동일하나, 요구 실적 기간(년수) 및 담당업무 인정범위에 대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섯째, 발주기관별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평가기준 및 인정범위 차이가 과도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참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평가방법을 현재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함.
- 여섯째, 기술인 평가체계가 복잡하고, 평가항목별 인정범위가 불명확하여 건설기술인의 자기평가가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술인 자기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인 ① 국토부 고시 개정을 통해 발주기관별 평가 기준 및 인정범위 차이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개선할 수 있으며, ② 건설기술인 자기평가 시스템 개발을 통해 건설기술인 및 입찰참가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경력 개발 전략 수립 및 입찰참가 준비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연구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건설사업관리 분야에 한정하여 수행되었으며,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 도로분야를 중심으로 9개 발주기관의 기술인 평가 체계를 비교·분석하는데 그쳐 보다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 향후 설계 등 용역,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다양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기술인 평가체계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분석 대상 발주기관 및 공사종류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인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및 건설기술인 자기평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함.

오치돈 (선임연구위원, chidon@cepik.re.kr)

홍유나 (선임연구위원, hyn7173@cepik.re.kr)

## 발주기관별 건설기술인 평가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24년 9월 인쇄

2024년 9월 발행

발행인 김문겸

발행처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50, 8층(논현동, 건설기술인회관)

TEL (02)6204-4332

FAX (02)6204-4341

홈페이지 [www.cepik.re.kr](http://www.cepik.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2024